

집합투자기구 변경 대비표

1. 정정대상 투자신탁 : HDC법인가입용MMF2호
2. 효력발생예정일(변경시행일) : 2020.10.08.
3. 주요 정정사항 : 부책임운용인력 삭제 및 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등

[신탁계약서] : 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정정 전	정정 후
<p>제9조(수익권의 분할) ① 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수익증권으로 <u>표시한다.</u></p> <p>② <생략></p>	<p>제9조(수익권의 분할) ① 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수익증권으로 <u>발행한다.</u></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u>예탁</u>)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u>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u>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p> <p>② 판매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u>법 제3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자계좌부("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라 한다. 이하 같다)</u>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p> <p>1. 고객의 성명 및 주소</p> <p>2. <u>예탁 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u></p> <p>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수익증권은 그 기재시에 <u>법 제309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본다.</u></p> <p>④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자("실질수익자"라 한다. 이하 같다)는 <u>예탁 수익증권을 점유하며, 예탁 수익증권에 대한 공유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u></p>	<p>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u>전자등록</u>)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p> <p>② 판매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u>전자증권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고객계좌부(이하 "수익증권고객계좌부"라 한다)</u>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p> <p>1. 고객의 성명 및 주소</p> <p>2. <u>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u></p> <p>③ <삭제></p> <p>④ 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u>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u></p>
<p>제11조(예탁 수익증권의 반환 등) ① <u>실질수익자는 당해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u></p> <p>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u>예탁 수익증권의 반환청구가 있는 경우 1,000좌권, 10,000좌권, 100,000좌권, 1,000,000좌권, 10,000,000좌권, 100,000,000좌권, 1,000,000,000좌권의 7종으로</u>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교부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 교부에 따른 실비를 <u>실질수익자에게</u> 청구할 수 있다.</p> <p>③ <u>실질수익자는 수익증권의 반환을 요구함에 있어 수익증권 수량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u> 수익증권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한다.</p>	<p>제11조(예탁 수익증권의 반환 등) <삭제></p>
<p>제12조(수익증권의 재교부) ① <u>실질수익자가 아닌 수익자("현물보유수익자"라 한다. 이하 같다)는 분실·도난 등의 사유로 인하여</u> 수익증권을 <u>멸실하는 경우에 공시최고에 의한 제권판결의 정보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u>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u>경유하여</u> 집</p>	<p>제12조(수익증권의 재교부) <삭제></p>

<p>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p> <p>② 현물보유수익자는 수익증권이 훼손 또는 오손된 경우에 이 수익증권을 첨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훼손 또는 오손의 정도가 심하여 그 진위를 판별하기 곤란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③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을 재교부하는 경우 현물보유수익자에게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p>	
<p>제13조(수익증권의 양도) ① 수익권의 양도에 있어서는 수익증권을 교부하여야 하며, 수익증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p> <p>②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예의 대체의 기재가 수익증권의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교부가 있었던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p> <p>③ <생략></p>	<p>제13조(수익증권의 양도) ① 수익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하며, 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p> <p>② 수익증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1조에 따른 질권 설정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입질의 효력이 발생한다.</p> <p>③ <현행과 같음></p>
<p>제14조(수익자명부 및 실질수익자명부) ①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한다.</p> <p>② 집합투자업자는 한국예탁결제원과 수익자명부 작성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예탁결제원은 관련법령·신탁계약서·위탁계약서 및 관련규정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p> <p>③ <생략></p> <p>④ 집합투자업자는 전항의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p> <p>⑤ 한국예탁결제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실질수익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p> <p>1. 실질수익자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 실질수익자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p> <p>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명부("실질수익자명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 및 실질수익자의 성명과 수익권의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p> <p>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실질수익자명부예의 기재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수익자명부예의 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실질수익자는 수익자로서의 권리행사에 있어서는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지분에 상당하는 수익증권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p> <p>⑧ <생략></p>	<p>제14조(수익자명부) ①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전자증권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야 한다.</p> <p>② 집합투자업자는 전자등록기관과 수익자명부 작성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전자등록기관은 관련법령·신탁계약서·위탁계약서 및 관련규정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집합투자업자는 전항의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p> <p>⑤ 전자등록기관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수익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p> <p>1. 수익자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 수익자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p> <p>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전자등록기관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수익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의 성명과 수익권의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p> <p>⑦ <삭제></p> <p>⑧ <현행과 같음></p>
<p>제15조(자산운용지시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신탁업자에 대하여 투자신탁재산별로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p>	<p>제15조(자산운용지시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신탁업자에 대하여 투자신탁재산별로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p>

<p>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 79조제2항에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대상자산을 운용하는 경우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할 수 있다.</p> <p>②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한 경우 그 <u>투자신탁재산으로</u>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 ④ <생략></p>	<p>탁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에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대상자산을 운용하는 경우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할 수 있다.</p> <p>②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한 경우 그 <u>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u>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p>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원화로 표시된 자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에 운용한다. 다만, 채무증권(법 제4조제3항의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 기업어음증권에 한하며, 환매조건부채권 매매는 제외한다)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운용하여야 한다.</p> <p>1. ~ 8. <생략></p> <p>9. <u>전자단기사채</u> 등</p> <p>② <생략></p>	<p>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원화로 표시된 자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u>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u>에 운용한다. 다만, 채무증권(법 제4조제3항의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 기업어음증권에 한하며, 환매조건부채권 매매는 제외한다)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운용하여야 한다.</p> <p>1. ~ 8. <현행과 같음></p> <p>9. <u>단기사채</u> 등</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9조(운용 및 투자 제한)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 2. <생략></p> <p>3.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의 평가액과 그 동일인을 거래 상대방으로 하는 그 밖의 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채무증권의 취득 당시 또는 그 밖의 거래 당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 <신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p> <p>가. ~ 나. <생략></p> <p>4. ~ 9. <생략></p> <p>② <생략></p> <p>③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산을 합산한 금액이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산 외의 자산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p> <p>1. ~ 3. <생략></p> <p>4. 잔존기간이 1영업일 이내인 자산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p> <p>가. ~ 다. <생략></p> <p><u>라. 전자단기사채</u></p> <p>5. ~ 7. <생략></p> <p>④ <생략></p>	<p>제19조(운용 및 투자 제한)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 2. <현행과 같음></p> <p>3.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의 평가액과 그 동일인을 거래 상대방으로 하는 그 밖의 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채무증권의 취득 당시 또는 그 밖의 거래 당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 <u>이 경우 한도를 초과하는 채무증권 또는 그밖의 거래에 대해서는 편입비율을 축소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u>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p> <p>가. ~ 나. <현행과 같음></p> <p>4. ~ 9.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산을 합산한 금액이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산 외의 자산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p> <p>1. ~ 3. <현행과 같음></p> <p>4. 잔존기간이 1영업일 이내인 자산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p> <p>가. ~ 다. <현행과 같음></p> <p><u>라. 단기사채</u></p> <p>5. ~ 7. <현행과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

<p>제26조(수익증권의 환매) ① ~ ③ <생략> <u>④실질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매를 청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u> <u>⑤현물보유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에 기재된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u> <u>⑥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자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본 조에 따라 수익증권을 환매한 경우 그 수익증권을 소각하여야 한다.</u></p>	<p>제26조(수익증권의 환매)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삭제></u> <u>⑤<삭제></u> <u>⑥<삭제></u></p>
<p>제27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①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실질수익자의 경우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에 환매청구를 요구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제2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② ~ ④ <생략></p>	<p>제27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①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 부터 제2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35조(상환금등의 지급) ① ~ ② <생략> <u>③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u></p>	<p>제35조(상환금등의 지급) ① ~ ② <현행과 같음> <u>③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u></p>
<p>제38조(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① ~ ③ <생략> <u>④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3항 본문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수익증권을 소각(消却)하여야 한다.</u></p>	<p>제38조(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삭제></u></p>
<p>제44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 ① ~ ③ <생략> <u><신설></u></p>	<p>제44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제51조제1항 이외의 사유로 제1항에 따라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8조에 따라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수익자를 제외한 나머지 수익자는 제5항에 따른 금액을 제39조와는 별도로 손실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단,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변경에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지급을 면제할 수 있다.</u> <u>⑤제4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다음 각 호에 의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u> 1. 금액 : 변경시행일 전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에 제39조제3항에 따른 해당 투자신탁 보수율 및 제2호의 기간일수를 곱한 금액과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 설정과 관련하여 지급한 제비용(관련세금 및 분담금, 법률자문료 등) 2. 기간 : 변경시행일부터 1년간. 단, 신탁계약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변경 시행일로부터 신탁계약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 <u>⑥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는 제5항 적용에도 불구하고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변경함에 따라 추가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제38조에 따라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수익자를 제외한 나머지 수익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u></p>
<p>제45조(집합투자기구의 해지) ① ~ ② <생략> <u>③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u></p>	<p>제45조(집합투자기구의 해지) ① ~ ② <생략> <u>③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u></p>

<p>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u>한국예탁결제원</u>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p>	<p>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u>전자등록기관</u>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p>
<p>제48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① <생략></p> <p>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p> <p>1. 소각</p> <p>2.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p>	<p>제48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p> <p>1. 전자증권법에 따른 말소의 전자등록</p> <p>2.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p>
<p>제50조(공시 및 보고서 등) ① ~ ⑥ <생략></p> <p>⑦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u>한국예탁결제원</u>을 통하여 기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p> <p>⑧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u>한국예탁결제원</u>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p> <p>⑨ ~ ⑩ <생략></p>	<p>제50조(공시 및 보고서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p> <p>⑦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u>전자등록기관</u>을 통하여 기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p> <p>⑧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u>전자등록기관</u>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p> <p>⑨ ~ ⑩ <현행과 같음></p>
<p>제52조(수익증권의 통장거래) 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u>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u>"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p>	<p>제52조(수익증권의 통장거래) 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u>수익증권저축약관</u>"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p>
<신설>	부칙
	이 신탁계약은 2020년 10월 08일부터 시행한다.

[일괄신고서/투자설명서] : 부책임용인력 삭제 및 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등

항 목	정정사유	정정 전	정정 후
요약정보			
운용전문인력	부책임용인력 변경	책임용인력: 정관옥 부책임용인력: 정훈	책임용인력: 정관옥 부책임용인력: <삭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연혁 추가		2020.10.08 : 부책임용인력 삭제 및 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5. 운용전문인력 가. 운용전문인력 나.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부책임용인력 변경	변경전 - 책임용인력: 정관옥 - 부책임용인력: 정훈	변경후 - 책임용인력: 정관옥
8. 집합투자기구의 투	개정사항 반영		

<p>자대상 가. 투자대상</p> <p>나. 투자제한</p>		<p>- 투자대상</p> <p>- 동일인 발행 채무증권 : 당해 채무증권의 취득 당시 다음 각 목의 한도를 초과하여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을 제외한다.]에 운용하는 행위</p> <p>① ~ ② <생략></p> <p>③ 발행 당시 만기가 7영업일 이내인 <u>전자단기사채</u> :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다만,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의 경우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0분의 5). 이 경우 ①채무증권의 한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p> <p>○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산을 합산한 금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산 외의 자산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p> <p>1.~ 3. <생략></p> <p>4. 잔존만기가 1영업일 이내인 자산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 다. <생략></p> <p>라. <u>전자단기사채</u></p> <p>5. ~ 7. <생략></p>	<p>- 투자대상(<u>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u>)</p> <p>- 동일인 발행 채무증권 : 당해 채무증권의 취득 당시 다음 각 목의 한도를 초과하여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을 제외한다.]에 운용하는 행위</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발행 당시 만기가 7영업일 이내인 <u>단기사채</u> :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다만,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의 경우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0분의 5). 이 경우 ①채무증권의 한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p> <p>○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산을 합산한 금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산 외의 자산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p> <p>1.~ 3. <현행과 같음></p> <p>4. 잔존만기가 1영업일 이내인 자산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 다. <현행과 같음></p> <p>라. <u>단기사채</u></p> <p>5. ~ 7. <현행과 같음></p>
<p>11. 매입, 환매, 전환 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p> <p>나. 환매</p>	<p>개정사항 반영</p>	<p>(5)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u>수익자가 수익증권의 일부에 대한 환매를 청구한 경우 판매회사는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잔여좌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수익증권을 교부합니다.</u></p>	<p>(5)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삭제></p>
<p>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p> <p>(2)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p>	<p>개정사항 반영</p>	<p>-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자산은 관계법령에 의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합니다.</p> <p><신설></p>	<p>-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자산은 관계법령에 의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합니다.</p> <p>- <u>그 밖에 집합투자재산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합니다.</u></p>

		<p>장내 파생상품 : 평가기준일에 당해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u>파생상품시장</u>에서 공표하는 <u>가격</u>. 다만, 평가일의 공표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 공표가격에 의하여 평가</p> <p>외화표시 상장주식 : 평가기준일에 해당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u>최종시가</u>로 평가하며, 복수의 나라에서 상장되어 있는 외국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에 그 주식을 취득한 국가에 소재하는 거래소의 <u>최종시가</u>로 평가</p>	<p>장내 파생상품 : 평가기준일에 당해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u>파생상품시장</u> (<u>해외 파생상품시장을 포함한다</u>)에서 공표하는 <u>가격</u>(<u>해외 파생상품의 경우 전날의 가격</u>). 다만, 평가일의 공표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 공표가격에 의하여 평가</p> <p>외화표시 상장주식 : 평가기준일에 해당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u>최종시가</u>로 평가하며, 복수의 나라에서 상장되어 있는 외국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에 그 주식을 취득한 국가에 소재하는 거래소의 <u>최종시가</u>(<u>해외 증권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u>)로 평가</p>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 총회 등 (2)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개정사항 반영	-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u>한국예탁결제원</u> 에 위탁하여야 하며, <u>한국예탁결제원</u> 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u>전자등록기관</u> 에 위탁하여야 하며, <u>전자등록기관</u> 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나. 임의해지	개정사항 반영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 사항을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u>한국예탁결제원</u> 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 사항을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u>전자등록기관</u> 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2) 자산운용보고서	개정사항 반영	①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u>한국예탁결제원</u> 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하 생략>	①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u>전자등록기관</u> 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하 현행과 같음>

[간이투자설명서]: 부책임용인력 삭제

항 목	정정사유	정정 전	정정 후
요약정보			
운용전문인력	부책임용인력 삭제	책임운용인력: 정관욱 부책임용인력: 정훈	책임운용인력: 정관욱 부책임용인력: <삭 제>

<끝>.